

응지세무대학교	전과규정	문서번호	4-1-08(D)-0
		제정일자	06.03.01
		최근개정	22.02.15
		주관부서	교학처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응지세무대학교 교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응지세무대학교의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전과는 타 학과(전공)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기 및 허가)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제5조(허용인원 및 사정기준), 제6조(제한 및 학점이수) 등을 기준으로 전출, 전입 학과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<개정 2010.03.01., 2017.12.18.>

~~제4조 삭제 <2017.12.18.>~~

제5조(허용인원 및 사정기준) ① 전과의 전입, 전출 정원은 재학인원의 10% 범위 내에서 전입, 전출 학과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합의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5.06.30.>

② ~~삭제 <2010.03.01.>~~

③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.

④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06.30.>

⑤ 전과(전공) 신청 인원이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허가한다.

1.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
2.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

제6조(제한 및 교육과정 이수) ① 산업체위탁교육생, 편입학 등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(전공)는 허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10.03.01.>

② 3학년의 전과를 불허한다. 다만, 학과폐지로 인하여 전과한 학생의 3학년 전과가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총장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
<신설 2015.02.06., 개정 2018.01.24.>

③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기 이후 전입한 학과의 학제 및 학년(학번)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졸업에 필요한 필수이수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에 따른다. <개정 2012.08.13., 2022.02.07.>

제7조(절차) ①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3.01.>

② ~~삭제~~ <2017.12.18.>

③ ~~삭제~~ <2014.01.13.>

제8조(등록금)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제9조(학과폐지에 따른 전과생의 예외 인정) 학과폐지로 인하여 전과한 학생의 경우 본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. <개정 2012.08.13.>



부 칙 <1판-개정/시행 2006.03.0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10.03.01.>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3판-개정 2012.08.13.> <시행 2012.03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9조(학과폐지에 따른 전과생의 예외인정)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소급적용한다.

부 칙 <4판-개정 2014.01.13.> <시행 2014.03.01.>

이 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5판-개정/시행 2015.02.06.>

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6판-개정/시행 2015.06.30.>

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7판-개정 2017.12.18.> <시행 2017.09.01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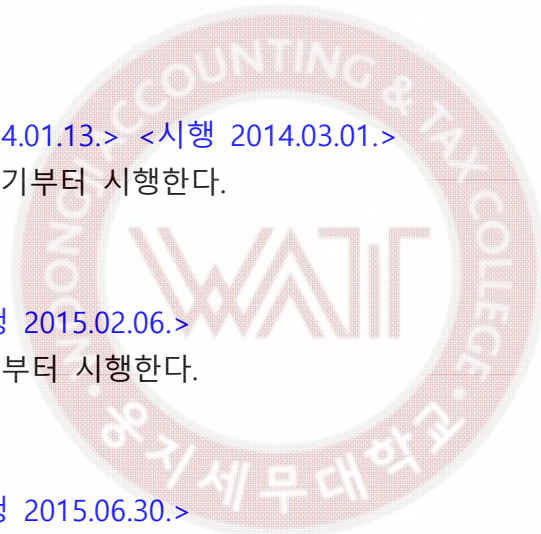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<8판-개정/시행 2018.01.24.>

이 규정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9판-개정 2022.02.07.> <시행 2022.03.01.> <공포 2022.02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

제2조(경과조치) 제5조 제3항의 '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.'와 제6조 제2항의 '3학년의 전과를 불허한다. 다만, 학과폐지로 인하여 전과한 학생의 3학년 전과가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총장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'는 전공 변경에 의한 전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